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안내

이 책자는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하였음



인 사 혁 신 처
인 사 혁 신 기 획 과

I 제도 개요

○ 정의

-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 도입 목적

-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정년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 등 실현

○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 제57조의3), 공무원임용규칙(제12장)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제11조의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 공무원연금법(제3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

○ 연혁

- 시간제공무원제도 도입근거 마련(‘02년 국공법 개정)
- 육아휴직대상자에 부분근무 공무원제도 도입(‘05년 공무원임용령 개정)
- 부분근무 공무원제도 폐지, 시간제 근무 도입(‘07년 공무원임용령 개정)
-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제도 마련(‘13년 공무원임용령 개정)

○ 제도 유형

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②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③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 공무원

II 신규 채용

□ 신규 임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 가능
-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쟁에 따른 신규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공무원임용령 제3조3

- ③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저소득층을 우대함으로써 균형인사 도모(우대요건 설정 등)

구 분	적용대상	법정비율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신규채용인원의 3.4% 이상 채용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2% 이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 이내

□ 채용 방식(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

□ **합격자 임용**(공무원임용령 제18조)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신규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음

※ 임용유예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임용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가능

III 인사 관리

◇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관리하되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평정 등에 있어 차별하지 말아야 함

□ **정년**

-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60세)과 동일

□ **근무시간**(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 원칙적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나 임용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5시간의 범위(15~25시간)에서 조정 가능

* 임용권자가 조정 가능한 주당 근무시간 범위를 15~35시간으로 개정 추진 중

□ **근무형태**(공무원임용규칙 제94조)

- 업무형편에 따라 오전·오후, 격일제 등으로 임용권자가 지정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형태 지정예시>

▶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

- 09:00 ~ 14:00(4시간), 10:00 ~ 15:00(4시간), 14:00~18:00(4시간)

▶ **격일제 근무**

- 월 09:00 ~ 18:00(8시간). 수 09:00 ~ 18:00(8시간). 금 09:00 ~ 12:00(4시간)

- 월 09:00 ~ 18:00(8시간). 화 09:00 ~ 14:00(4시간). 수 09:00 ~ 18:00(8시간)

▶ **요일별로 다른 근무시간**

- 월 09:00 ~ 14:00(4시간). 화 14:00 ~ 18:00(4시간). 수 09:00 ~ 14:00(4시간)

- 목 09:00 ~ 15:00(5시간). 금 09:00 ~ 12:00(3시간) 등

□ **재직기간**(공무원임용규칙 제95조)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계산방식

$$\text{재직기간} = \frac{\text{시간선택제 근무기간}}{\text{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항에 의한 근무시간

□ **승진**(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5조의4)

- 승진가능 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승진후보자명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또는 전일제와 통합하여 작성

□ **대우공무원**(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

-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시보**(국가공무원법 제29조)

- 5급(상당)은 1년, 6급 이하 6개월(전일제와 동일)

□ **보직관리**(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임용령 제44조, 제45조)

- (필수보직기간 준수) 최초 임용 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은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이내 전보 불가
- (전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전공분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가 적합한 동일직렬 내 유사업무 분야로만 전보 가능
- (전직) 시간선택제근무 적합분야로만 전직 가능

□ **결원보충**(국가공무원법 제43조, 공무원임용령 제42조)

- 1년 이상 파견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가능(전일제와 동일)

※ 공무원임용령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파견**(공무원임용령 제41조, 공무원임용규칙 제30조)

- 파견 직위가 시간선택제 직위로 운영 가능한 경우 파견 가능

□ **인사교류**(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공무원임용령 제48조)

- 행정기관 상호간 필요할 경우에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직위 내에서 인사교류 실시 가능

□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 질병치료, 육아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IV 교육 훈련

- ◇ ‘先교육 後배치’ 원칙을 준수하여 신규채용자에게 요구되는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치
- ◇ 각종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적극 포함하고 사이버 교육, 직장 내 멘토링 등을 통하여 조기적응 지원

□ 기본교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자체 교육훈련 기관 등을 통해 직무교육 등 보완 실시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상시학습)

= 당해계급 시간선택제 근무연수(근무시간 비례) × 중앙행정기관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은 다음 계산식을 따름
 -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 기준시간

$$\text{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frac{\text{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text{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근무자 기준 상시학습시간 예시

적용 대상		교육훈련(상시학습) 기준시간	
		전일제	시간선택제
일반직 4급 이하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신설직렬 제외)		80시간	40시간
관리운영직군· 신설직렬	사무운영 직렬	40시간	20시간
	운전·방호 직렬	10시간	5시간
	기타 직렬	20시간	10시간

□ 기타

- 직장교육,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등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실시

V

보수 제도

□ **봉급**(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3)

- 전일제 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 지급

※ 예시) 7급3호봉(1,993,000원)인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주 20시간 근무할 경우
 * 월 봉급액(정상근무시 봉급액 × $\frac{20}{40}$) ⇒ 996,500원
 ※ 예시) 기본연봉월액이 2,000,000인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주 20시간 근무할 경우
 * 지급액(정상근무시 기본연봉월액 × $\frac{20}{40}$) ⇒ 1,000,000원

- 승급기간 : 1년(전일제공무원 동일)

□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 전일제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하되,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대상 특수업무수당 지급
 ⇨ 근무기간 5년 이하는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5년 초과 시 8%
 ※ 지급액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으며 타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도 포함
-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text{지급액} = \text{전일근무공무원 지급액}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text{「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주당 출근 근무일수}}$$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근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시작일~3개월	4개월~12개월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 월 봉급액의 8할 지급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 월 봉급액의 5할 지급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정근수당 지급 시 전일근무 공무원과 같이 근무연수에 1년 단위로 산입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전일근무 공무원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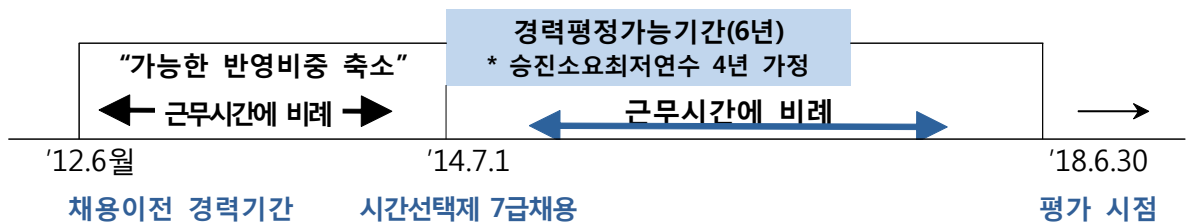
Ⅵ 성과 평가

□ 근무성적평가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에 대해 전일제와 동일 방식으로 평가
 - ※ 평가대상인 실 근무기간 1개월 이상 요건도 전일제와 동일(근무시간 비례 아님)
- 전일제와 구분하여 별도 평가단위를 구성할지 여부는 각 기관 자율사항이나 시간제 근무에 따른 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평가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상 평정의 일반원칙 준수

□ 경력평정

- 근무경력은 기본적으로 재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각 기관에서 결정하되, 전일제와의 형평성 및 민간경력 우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성과상여금

- 전년도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근무기간에는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시간선택제공무원(6급)이 평가대상기간(1년) 중 3개월을 시간선택제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하고 S등급을 받은 경우(근무기간이 3개월임)
 - 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액 = $(3,525,600\text{원} \times \frac{20}{40}) \times 172.5\% \times \frac{3}{12} = 760,207\text{원}$
 - ②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 지급액 = $(3,525,600\text{원} \times \frac{20}{40}) \times 172.5\% = 3,040,830\text{원}$

- 반드시 전일제와 구분하여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하되, 시간선택제가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 가능

□ 성과연봉

- 전년도 평가대상기간 중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 지급

- 19년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대상기간('18년) 동안 시간선택제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한 경우
- 지급액 = 성과연봉액×20/40

VII 맞춤형 복지

- ◇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

※ 휴직·시보근무·국외 파견 중인 자는 맞춤형 복지 적용 배제 또는 제한 가능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복지점수 : 기본복지점수 +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
- 복지항목 구성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6조)

구 분		구 성	사 례
기본 항목	필수	◦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생명/상해보험
	선택	◦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율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 개인별 복지점수(기본+근속+가족점수) * 1점은 1천원에 상당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 400점 일률 배정	◦ 근무연수 1년당 10점 ◦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 배우자를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1인당 50점 * 단,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 ※ 상세 내용은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www.gwp.or.kr)을 참고
- ※ 민간시스템 사용기관은 해당기관 맞춤형 시스템 참고

VIII 공무원연금

□ 퇴직급여

급여종류	지급요건	비고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때	택 1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 대신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자가 10년을 초과한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	

□ 퇴직수당

- 지급요건 :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산정방법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지급비율
- 지급비율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6.5%	22.75%	29.25%	32.5%	39%

- 재직기간 감축 :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은 1/2을 감축

※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고용휴직, 노동조합 전임자, 육아휴직, 법정 의무수행휴직 제외

IX 상훈 제도

- 포상 대상·훈격·요건, 절차 등은 「상훈법」 및 「상훈법 시행령」에 따르며, 서훈기간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 지침」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참조

*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X

복무 제도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름

□ **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3, 공무원임용규칙 제98조)

○ **(연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가시간 산정 후 시간단위로 실시

$$\text{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text{시간}$$

※ 예시) 재직기간이 2년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주 20시간)의 연가시간 산정
 → 14일 × $\frac{20}{40}$ × 8시간 = 56시간

○ **(병가)** 일반병가 연 60일 및 공무상병가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 (일반병가) (a)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b)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단,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 연도의 구분없이 180일의 범위안에서 승인

○ **(특별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

-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수업휴가는 복무규정 별표3에 따라 적용

구분	내용
경조사휴가	· (결혼) 본인 : 5일 / 자녀 : 1일, (출산) 배우자 : 10일 · (입양) 본인 : 20일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경조사휴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 참조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 출산 전·후 : 90일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i)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 : 일 최대 2시간 ii)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 : 일 최대 1시간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단, 최소근무시간 3시간 충족) i)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 : 일 최대 2시간 ii)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 : 일 최대 1시간
자녀돌봄휴가	학교 공식행사,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 : 연 2일(16시간)

□ **대체휴무**(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3, 공무원임용규칙 제98조)

- 행정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토요일·공휴일·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다른 정상근무일 지정가능)에 휴무 조치 가능
-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한 시간이 휴무하는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미적용

※ 월·수·금에 5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화요일에 4시간 근무
→ 대체휴무 불가, 초과근무 인정

□ **기타사항**(공무원임용규칙 제98조)

- 시간선택제 근무제도의 취지상 초과근무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긴급한 본연의 업무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 후 초과근무 가능
-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 가능
※ 단, 비상근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비상소집에는 응소하여야 함

XI **겸직 허가**

□ **영리업무**(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영리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금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영리업무 종사 금지요건**

- ①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 ③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 취득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겸직허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 위 영리업무 금지요건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의 경우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겸직허가 기준**

-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며,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무시간 외 겸직업무 종사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비교적 폭넓게 겸직 여부를 판단함
- 소속 기관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영리업무가 낮은 급여로 인한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지를 반드시 고려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겸직업무의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및 겸직하는 업무의 통상적인 급여수준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가능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직무가 정형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집행업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등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음
- 겸직업무의 내용이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등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근무시간 외에 겸직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 및 시간외근무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겸직허가 절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소속 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함(다만,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채용하려는 행정기관은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등의 단계에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

(외부강의)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로 본인·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 방송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

(자문위원·전문 상담 등)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직무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은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자문위원·전문상담사로 종사 가능

(저술, 출판, 번역 작가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의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회·연 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